

\*기존에 정오 공지했던 시행령 제1조의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1항에서 지방교육세 및 담배소비세가 제외된 부분은 원래의 내용이 맞는 것으로 재 정정합니다. (**기본서상의 내용이 맞음**)

1. p33 4. 과세물건 확정 시기(법 제16조)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b>해당 물품이 도난 되거나 분실될 때</b>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b>해당 물품이 도난 되거나 분실된 때</b>

2. p34 5. 적용 법령과 과세환율(법 제17, 제8조)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2) 과세환율 [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적용 법령)에 따른 날(보세건설자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2) 과세환율 [법 제18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법 제17조(적용 법령)에 따른 날( <b>보세건설장에</b>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3. p36 2) 특별납세의무자(법 제19조 제1항) - 굵은글씨

수정전	수정후
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 하역허가를 받은 자	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 <b>하역허가를 받은 자</b>

4. p148 (6) 자료제출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②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② 덤핑물품의 수입사실과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b>증빙자료</b> 3부

5. p158 (1) 원칙적인 부과방법 √ 핵심체크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	-----

① 덤프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프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① 덤프방지관세를 정률세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덤프률의 범위 안에서 <b>결정한 율</b> 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6. p159 (2)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 제목삭제

수정전	수정후
(2)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	<del>(2)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부과방법</del>

7. p159 (3)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방법 - 제목수정

수정전	수정후
(3)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방법	<b>(2)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 공급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방법</b>

7-1. p162 및 191 (1) 약속 - 2025년 6월 개정사항 미반영

수정전	수정후
(1) 약속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약속 덤프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 <b>전자문서를 포함한다</b> )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 <b>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b> )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약속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b>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b> 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약속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b>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을 제의</b> 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 <b>전자문서를 포함한다</b> )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 <b>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b> )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p188 (1) 원칙적인 부과방법 - 띄어쓰기 및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

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하는 경우 상계관세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b>보조금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b>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	--

8-2. p209

수정전	수정후
특별긴급관세액 계산식에서 세율 퍼센트 앞에 X(곱하기) 누락	아래와 같이 X(곱하기) 추가 수정

(4) 가격기준

가격기준에 따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해당 양허세율에 따른 관세에 다음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X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X 30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X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X 50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X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X 70퍼센트]
70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X [29.5퍼센트 + (하락률 - 70퍼센트포인트) X 90퍼센트]

9. p252 1.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법 제92조)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할 법인을 포함하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이 <b>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b>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b>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b> )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등이 <b>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b>

10. p262 3.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신청(시행규칙 제55조)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상기 1. ①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기 1. <b>(1)의</b>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1. p341 (1) 감치대상(법 제116조의4 제1항)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	-----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정수하는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b>부과·징수하는</b> 내국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	---

11-1. p688 (2)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오타정정

수정전	수정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②, ③ 또는 ④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②, ③ 또는 <b>⑤에</b>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p759 2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법 제33조) - 개정사항 미반영 정정

수정전	수정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법 제208조 제4항(매각대행기관)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법 제208조 제4항(매각대행기관)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233조의2 제2항(수출입물품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233조의2 <b>제1항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b>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③ 법 제255조의2 제2항 후단(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심사)에 따라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③ <b>법 제255조의2 제2항 후단(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심사)에 따라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사람 (삭제)</b>
④ 법 제322조 제5항(통계자료 및 통계의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법 제322조 제5항(통계자료 및 통계의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에 따라 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법 제327조의2 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⑤ 법 제327조의2 제1항에 따른 관세정보원의 임직원
⑥ 법 제327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⑥ 법 제327조의3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
⑦ 법 제32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⑦ 법 제32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⑧ 다음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⑧ 다음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 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 법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 법 제118조의4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b>㉤ 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삭제)</b>
㉥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 법 제176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 법 제176조의3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 위원회</li> <li>⊗ 법 제232조의3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li> <li>⊗ 법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li> </ul>	<p>허심사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 위원회</li> <li><del>⊗ 법 제232조의3-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삭제)</del></li> <li>⊗ 법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li> </ul>
---	---